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
2.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식품등의 압류·폐기처분 또는 위해방지 조치 명령
3.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
4.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
5.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·징수
6.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
7.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
8.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한다.</u> <u>1.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</u> <u>2.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식품</u> <u>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</u> <u>업무 및 식품등의 압류·폐기</u> <u>처분 또는 위해방지 조치 명</u> <u>령</u> <u>3.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등</u> <u>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</u> <u>4.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</u> <u>품목류 제조정지명령</u> <u>5.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</u> <u>과징금 부과·징수</u> <u>6.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사실</u> <u>의 공표</u> <u>7.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</u> <u>8.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</u> <u>과·징수</u> 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<u>② (생략)</u>	